

의안번호	제 127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3월 일 (제 298 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11년 2 월 25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발의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발 의 자 : 박종성 의원

최병윤·김영주·김양희
정지숙·유완백·임헌경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정비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법령에 「」 사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한’를 ‘~에 따른’으로 변경
-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그 밖에 일본식 표현(타, 당해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함

다. 예산조치 : 예산조치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장전시”를 “수장 전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2. 생략 12.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2.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1.~2. 생략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 4. 생략 5.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재산출연)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생략 2.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대학 등 기타 출연금	제6조(재산출연)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생략 2.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대학 등 그 밖의 출연금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구원은 <u>매회계연도</u>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u>당해</u>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u>제1항에 의하여</u>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구원은 <u>회계연도</u>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u>해당</u>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u>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보고·검사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u>제1항</u>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고·검사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u>제1항에 따른</u>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u>따라</u>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및 <u>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u>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 및 「 <u>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u>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